

# '20년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
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여, 각 분야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'2020년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지원 사업'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1. 22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## 1 사업 목적

- 제조-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,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
    - (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)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,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
    - (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)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,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'공장없는 제조기업\*'의 활성화 도모
- \* 부품,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·설계 등 소프트웨어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

### (참고)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념

□ '제조업 소프트웨어'는 생산 프로세스 내에서 기계·설비 등 유형의 요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, 지식·경험 등 무형의 요소를 통해 제품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입 요소를 의미

□ 좁게는 기획·설계 등 제품 생산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정되고, 넓게는 제조 가치사슬 전분야 뿐만 아니라 인사·총무, 마케팅·A/S 등 기업운영 관련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음



## 2

## 지원 내용

### 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지원

□ 지원대상 :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

- \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- \*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
- \*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

□ 지원분야 : '제조업 소프트웨어' 영역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

#### < 지원분야 정의 >

- <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항 가목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
- <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항과 관련된 활동
- <산업디자인 진흥법> 제2조(정의)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
- <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> 제2조(정의) 1,2항과 관련된 활동

⇒ 상기의 활동 중, 특정한 유형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그 제조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,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

- \* 조항별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

□ 지원내용 : 지원분야 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(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) 비용 지원

- \* '15~'18년 既지원받은 기업의 경우,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,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(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)
- \*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기관(전문기업 및 기관)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

#### < 지원내용 예시 >

구분	지원내용
엔지니어링	▪ 제품기획, 기본설계(해석), 상세설계(제품, 공정설계), 엔지니어링 SW 활용(라이선스 구입 불가능) 및 활용기술, 설비제어 등
	ex)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구조방안 도출 지원,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
소프트웨어	▪ 기계·장비·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 및 정보보안 관련 SW 등
	ex)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
디자인	▪ 제품 컨셉, 부품·제품의 UI/UX 디자인 등
	ex)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

□ 지원기간 : 8개월 (협약기간 : 2020. 5. 1 ~ 2020. 12. 31)

□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 ~ 5천만원 이내 (과제별 차등 가능)

- \* 총 21개 내외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예정
- \*\* 기술료 비징수

-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  - 정부출연금 지원비율

구 분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
중견기업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% 이하	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%* 이상
중소기업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% 이하	

\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(민간부담금) 제4항에 근거

□ 지원방법 : 자유공모

구 분	신청방법
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청 주체) 제조기업 단독 신청</li> <li>○ (매칭기업 정보확인)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(<a href="http://www.softpowerup.or.kr">www.softpowerup.or.kr</a>)을 통해 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·전문분야·사용SW 등을 확인하여,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(과제 신청)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(3개 이하) 매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매칭기업 확정)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(미제출시 선정 취소)</li> </ul> </li> </ul>
전문기관 서비스 활용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청 주체) 제조기업과 전문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관기관) 제조기업, (참여기관) 대학 및 연구기관</li> </ul> </li> <li>○ (참여기관 가능대상)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 1항의3 및 1항의4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</li> <li>○ (과제 신청)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문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,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(별도 매칭지원 없음)</li> </ul>

\*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,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([www.softpowerup.or.kr](http://www.softpowerup.or.kr))에 공급자 가입(문의처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/ 031-8040-6785)

## 나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

□ 지원대상 : 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(공장없는 제조기업)

- \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- \*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

□ 지원내용 : 신규 제품(시제품 등) 생산과 관련된 아웃소싱 비용 지원

- \* '15~'18년 既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
- \*\* 생산·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
-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, 기획·설계 및 연구 개발이 既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

### < 지원내용 예시 >

지원 내용
ex)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,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,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, 수정 설계 지원 등

□ 지원기간 : 8개월 (협약기간 : 2020. 5. 1 ~ 2020. 20. 31)

□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 ~ 5천만원 이내 (과제별 차등 가능)

- \* 총 12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
- \*\* 기술료 비징수

○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
- 정부출연금 지원비율

구분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
중소기업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% 이하	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%* 이상

\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(민간부담금) 제4항에 근거

□ 지원방법 : 자유공모

### 신청방법

- (신청 주체) 소프트웨어 전문기업(공장없는 제조기업) 단독 신청
- (매칭기업 정보확인) 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([www.softpowerup.or.kr](http://www.softpowerup.or.kr))을 통해 확인
  - 지역·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,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
- (과제 신청)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신청
  -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(3개 이하) 매칭 가능

- (매칭기업 확정)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생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
  -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(미제출시 선정 취소)

\* 생산 전문기업으로,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([www.softpowerup.or.kr](http://www.softpowerup.or.kr))에 공급자 가입(문의처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/ 031-8040-6785)

### 3 | 평가 기준

#### 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

항목	비중	세부항목	검토기준
사업목표 (20)	10	▪ 목표의 구체성	▫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
	10	▪ 목표의 실현가능성	▫ 추진전략 및 체계, 일정 등의 적정성
지원의 타당성 (30)	15	▪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	▫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▫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▫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
	15	▪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	▫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,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▫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
전략의 적합성 (20)	10	▪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	▫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, 위험극복 방법 ▫ 제조기업-소프트파워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
	10	▪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의 적절성	▫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, 매칭 가능성 (매칭전략) 또는 컨소시엄 대상 전문기관의 적합성
기대효과 (30)	10	▪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	▫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▫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
	10	▪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	▫ 기술발전 기여, 개발기간 단축, 비용 절감 등 기술·경제·산업적 측면의 효과 ▫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
	10	▪ 일자리 창출 효과	▫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·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
합계	100	-	-
가점 (최대 5점)	2	▪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(상위 20%)	
	2	▪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(신청시점 자격유지 必)	
	2	▪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	

## 나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

항목	비중	세부항목	검토기준
사업목표 (20)	10	▪ 목표의 구체성	◦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
	10	▪ 목표의 실현가능성	◦ 추진전략 및 체계, 일정 등의 적정성
지원의 타당성 (30)	10	▪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	◦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◦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◦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
	20	▪ 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 우수성	◦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,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◦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,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
전략의 적합성 (20)	10	▪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	◦ 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◦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
	5	▪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	◦ 생산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(매칭 전략)
	5	▪ 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	◦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(대상)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
기대효과 (30)	10	▪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	◦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(양산 등) 계획의 구체성 ◦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
	10	▪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	◦ 기술발전 기여, 개발기간 단축, 비용 절감 등 기술·경제·산업적 측면의 효과 ◦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
	10	▪ 일자리 창출 효과	◦ 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·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
합계	100	-	-
가점 (최대 5점)	2	▪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(상위 20%)	
	2	▪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(신청시점 자격유지 必)	
	2	▪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	

## 4

### 선정 절차



(사전 검토)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,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

\* 세부내용은 [6-가. 지원제외 처리기준] 참조

(서면 평가)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,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1.5배수 이내 선정

\* [3. 평가 기준]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

□ (발표 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를 바탕으로, 산·학·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발표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
\* 총괄책임자 PPT 발표(15분) → 질의응답(15분) 순으로 진행하며, [3. 평가 기준]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

## 5 | 접수 방법 및 문의처

### 가 | 접수 방법

구 분	내 용
접수기간	· '20. 2. 12(수) 09시 ~ '20. 3. 18(수) 18시
접 수 처	· 온라인 등록 (KIAT 사업관리시스템,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 *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
서식교부	·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iat.or.kr">www.kiat.or.kr</a> )에서 다운로드 가능 - 홈페이지 → 사업·지원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
접수절차	① 통합회원가입 -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(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
	② 온라인 등록 - 주관기관 로그인 → 주요업무 → 과제신청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 -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
	③ 파일 업로드 -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, KIAT 사업관리시스템(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 업로드 -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-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
	④ 접수확인증 출력 - 접수증 출력 후 신청·접수 완료 확인(제출 불필요)
유의사항	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<u>접수기간 초기 준비</u>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<u>사업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/u> ③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<u>연락처의 정확한 입력</u> 필요 ⑥ <u>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</u>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기 타	·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(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)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

**나 | 제출 서류**

구분	신청서식	온라인 제출서류	필수여부
1	별지 제1호	▪ 사업계획서	필수
2	별지 제2호	▪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
3	별지 제3호	▪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
4	별지 제4호	▪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	
5	-	▪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	
6	-	▪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
7	-	▪ 주관기관 직전 2개년('18~'19년)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
8	-	▪ 우대가점 증빙서류 (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증, 창조경제 혁신센터 추천서)	해당시

\*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: <http://sminfo.mss.go.kr>

\*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: <http://www.hpe.or.kr>

**다 | 문의처**

구분		담당	연락처
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	전담기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	▪ ☎ 02-6009-3516 ▪ (E-mail) jinyj87@kiat.or.kr
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		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	▪ ☎ 02-6009-4374~6
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	운영기관	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	▪ ☎ 031-8040-6785 ▪ (E-mail) yeun@kitech.re.kr

##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

※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 
(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)

-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  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- ②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
 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
  -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
-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
- ④ 참여제한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
-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 -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 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
  -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
- ⑦ 중소·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
  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

유 형	정상기업	한계기업
중견기업	5	4
중소기업	3	2

- ⑧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수
  -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
  -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

**나** | **관련 규정**

- <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>, <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>을 준용

\*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 → ‘통합검색’ 선택 후 요령명 검색 → 세부내용 확인

**7** | **사업설명회 일정**

- 사업내용,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

구 분	개최일자	개최장소
서 울	'20. 2. 26 (수) 15:00~	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)



**▪ <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항 가목**

가. 연구, 기획, 타당성 조사, 설계, 분석, 계약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시험운전, 평가, 검사, 안전성 검토, 관리, 매뉴얼 작성, 자문, 지도, 유지 또는 보수

**▪ <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항**

1. "소프트웨어"란 컴퓨터, 통신,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(記述書)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.

**▪ <산업디자인 진흥법> 제2조(정의)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"산업디자인"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·기능적·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·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(창작·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)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, 제품디자인·포장디자인·환경디자인·시각디자인·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.

**▪ <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> 제2조(정의) 1,2항과 관련된 활동**

1. "이러닝"이란 전자적 수단, 정보통신 및 전파·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.  
2. "이러닝콘텐츠"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·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.